

정 관

2025년 7월 3일 제1차 ISU 임시총회에서 채택

이 정관은 부록 1 「경과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0차 ISU 정기총회 개최 시에 발효한다.



2025 정관

목차

I.	총칙.....	3
II.	회원.....	5
III.	조직.....	9
	A. 총회.....	11
	B. 이사회.....	16
	C. 회장.....	19
	D. 사무총장 및 ISU 사무국.....	20
	E. 위원회.....	20
	F.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IU).....	22
	G. 징계위원회.....	24
IV.	중재.....	25
V.	대회 및 이벤트 권리.....	26
VI.	면책.....	26
VII.	최종 규정.....	26
	부록 1. 경과 규칙.....	28
	부록 2 - 정의.....	34

총칙

1 명칭, 스포츠 종목 및 IOC 승인

국제빙상연맹(International Skating Union, 이하 "ISU")은 전 세계 ISU 스포츠 종목을 관장하는 유일하고 배타적인 국제 통괄 기구이다.

ISU 스포츠 종목이란 빙상에서 아이스스케이트를 착용하고 행하는 경주 또는 예술적 연기를 수반하는 모든 스포츠 종목과, 이들 스포츠를 e스포츠, 전자 게임 또는 그 밖의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 모든 종목을 말한다.

ISU는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을 포함하여 서로 구별되는 둘 이상의 스포츠 부문으로 구성된다.

ISU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을 담당하는 국제경기연맹으로 승인을 받았다.

2 법적 지위, 본부 및 자원

ISU는 스위스 민법 제60조 이하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협회로 설립된다.

ISU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다. 스위스 내 ISU의 등록 주소지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ISU의 수입은 대회, 스폰서십, 파트너십, 방송, 허가권, 상업적 권리, 공적 보조금, 회원의 회비, ISU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IOC의 올림픽 수익 배분, 기부, 유증 및 그 밖의 적법한 원천에서 얻을 수 있다.

3 목적

ISU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a) ISU 회원국, 선수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ISU 스포츠 종목을 진흥하고 발전시키고, 모든 연령층과 인구집단에서 그 성장과 대중성을 확보한다;
- b) ISU 스포츠 종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며, 전 세계 대회에서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c) 국제 대회를 조직하고 감독하여 그 대회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적용되는 ISU 규정에 따라 시행되도록 한다;
- d) 페어플레이를 증진하고, 도핑 방지 조치, 모든 형태의 학대 또는 차별의 방지를 포함하여 선수, 코치, 오피셜 및 그 밖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건강, 안전 및 복리를 보호한다;
- e) 선수, 코치 및 오피셜의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발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ISU 스포츠 종목의 성장을 지원한다;

- f)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고, 올림픽 헌장에 규정된 올림픽 운동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고 증진한다;
- g) ISU 스포츠 종목의 발전을 위한 ISU 자금의 사용을 포함하여 모든 운영에서 건전한 재정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책임성, 민주적 절차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포함하는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시행하여 ISU가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h) 청렴성, 투명성 및 책임성을 포함하여 ISU 스포츠 종목 내에서 높은 윤리 기준을 증진하고 시행한다;
- i) 혁신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관행을 증진하여 ISU 스포츠 종목과 그 대회에 장기적 존속 가능성을 확보한다;
- j) ISU 스포츠 종목과 그 규칙, 그리고 그것이 사회 전반에 주는 이익에 관하여 교육을 제공하고 인식을 장려한다;
- k) 전 세계적으로 ISU 스포츠 종목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
- l) ISU 스포츠 종목 내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그리고
- m) ISU 스포츠 종목을 발전시키고 진흥하기 위한 그 밖의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4 차별 금지, 평등 및 중립성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나 그 밖의 견해,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를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은 금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부과한다.

ISU는 참가, 리더십, 지도, 심판, 표현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ISU 스포츠 종목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과 포용성을 적극적으로 증진한다. ISU는 그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절차 안에서 균형 있고 다양한 성별 및 회원국 대표성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정치적, 종교적 및 사회적 사안에서 중립성을 유지하여 ISU 스포츠 종목이 화합과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남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용어

ISU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모든 공식 문서, 통지 및 간행물은 영어로 작성한다.

회원국은 필요한 경우 자국 언어로의 번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번역된 문서로 인하여 분쟁이나 모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회원

6 일반 요건

- 6.1 자국 내에서 ISU 스포츠 종목을 조직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단체는 이 정관과 ISU 규정에 정한 요건에 따라 ISU 회원이 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다.
- 6.2 어느 국가에 스케이팅의 두 부문 모두 또는 해당 부문을 관장하는 국가 단체가 회원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국가의 종합 스포츠 단체에 ISU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6.3 같은 국가에서 스케이팅의 두 부문을 서로 다른 단체가 관장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국가에서 두 회원을 승인하고 하나를 피겨스케이팅 회원으로, 다른 하나를 스피드스케이팅 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6.4 어느 국가에 스케이팅의 한 부문에 대해서만 국가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이사회는 그 국가 단체를 회원으로 승인하고 이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 6.5 회원이 다른 스포츠를 담당하는 조직의 일부인 경우, 그 명칭, 정관 및 조직 구조에서 ISU 스포츠 종목을 명확히 식별하고 이를 관장하여야 한다.

7 임시 회원 자격

- 7.1 새로 승인된 회원에는 최소 3년간 임시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즉시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2 국가 단체가 회원으로 있지 않은 국가에서 스케이팅의 한 부문 또는 두 부문을 모두 관장하는 단체에도 임시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7.3 정회원 자격에 관한 일반 요건은 임시 회원 자격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신청

- 8.1 회원 가입 신청서는 ISU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와 함께, 이 정관과 ISU 규정 및 ISU 통신문을 준수하겠다는 신청 단체의 서명된 서약을 첨부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2 회원 자격 신청서에는 영어로 기계 번역된 신청 단체의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을 포함해야 하며, 그 정관에는 다음의 필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a) 이 정관과 ISU 규정 및 ISU 통신문을 항상 준수할 것;
 - b) 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인정할 것.

- 8.3 이사회는 회원 가입 신청의 승인 여부를 절대적인 재량으로 결정한다. 이사회는 국내외 정치 단체나 스포츠 단체의 어떠한 결정에도 구속되지 않으나,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신청 단체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사회가 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신청 단체는 ISU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결정에 대하여 차기 총회에 항소할 수 있다.

9 회원의 권리

- 9.1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총회에 참가하고, 표결에 부쳐지는 모든 사안과 ISU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
- b) ISU 규정에 따라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제안을 총회 안건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제출할 권리;
- c) ISU 기구의 모든 선출직에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
- d) ISU 기술위원회의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기술 규칙 제정에 참여할 권리;
- e) 해당 대회 of 출전 자격 규칙에 따라 국제 빙상 대회에 참가할 권리;
- f) 이 정관과 ISU 규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권리.

- 9.2 제7조에 정의된 임시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a) 옵서버로서 총회에 참가할 권리;
- b) 해당 대회 of 출전 자격 규칙에 따라 국제 빙상 대회에 참가할 권리;
- c) 이 정관과 ISU 규정이 임시 회원에 대하여 정한 그 밖의 모든 권리.

10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i. ISU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을 지원할 의무;
- ii. 자국 내에서 스케이팅 활동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며 지원할 의무;
- iii. 이 정관, ISU 규정, ISU 윤리강령, ISU 인권보호정책(Safeguarding Policy), ISU 통신문, 그 밖의 이사회 결정 및 ISU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CAS 또는 ISU가 권한을 부여한 그 밖의 기구의 결정을 항상 전적으로 준수할 의무

- iv. 회원의 정관 또는 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채택 전에 ISU 사무국의 검토를 받도록 그 개정안을 ISU에 제출할 의무;
- v. (i) ISU가 전 세계적으로 ISU 스포츠 종목을 배타적으로 관장하는 유일한 국제 공인 기구라는 점과 (ii) 회원의 정관, 규약 또는 규칙이 이 정관 또는 ISU 규정과 저촉되는 경우 후자가 우선한다는 점을 회원국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인정할 의무;
- vi. 회원 또는 그 구성원, 대표자, 선수, 선수 지원 인력, 오피셜, 회원국의 운영에서 직위를 보유하는 자, 직원, 그 밖에 회원국과 직업적 또는 상업적 관계에 있는 모든 인원이 이 정관, ISU 규정, ISU 인권보호정책, ISU 통신문, 그 밖의 이사회 결정 및 ISU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과, CAS 또는 ISU가 권한을 부여한 그 밖의 기구의 결정을 준수하고 이행하도록 할 의무;
- vii. 회원의 정관에 따라 최소 2년마다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되, 그 총회가 소속 관할권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한 회원의 재정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며, 최소 4년마다 정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할 의무. 총회의 일자와 장소는 회원이 소속 구성원에게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ISU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ISU는 회원의 총회에 옵서버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ISU가 요청하는 경우 영어로 기계 번역한 회의록을 60일 이내에 ISU에 제출하여야 한다;
- viii. 제3자나 정부의 부당한 영향, 특히 이 정관에 따른 ISU의 목적과 가치를 지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 또는 의사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운영할 의무;
- ix. 회원을 대표하는 선수와 오피셜이 ISU가 인정하거나 승인한 국제 대회에만 참가하도록 요구할 의무. 다만, 이때 ISU는 스위스법과 EU법에 따라야 한다;
- x. ISU에 대한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의무;
- xi. 회원 또는 그 구성원, 대표자, 선수, 선수 지원 인력, 오피셜, 회원국의 운영에서 직위를 보유하는 자, 직원, 그 밖에 회원국과 관련된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ISU의 명예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훼손되지 않도록 할 의무; 그리고,
- xii. ISU가 ISU 이벤트 및 활동과 관련된 모든 상업적 권리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의무.

11 회원 자격의 정지 및 해지

11.1 ISU의 회원 자격은 다음의 경우에 해지된다.

- a) 회원이 (자국 법률에 따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 b)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 c) 및/또는 회원국이 ISU에서 제명되는 경우.

- 11.2 회원은 ISU 회계연도 말일부로 ISU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 통지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ISU 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 11.3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회원을 제명할 권한을 가진다:
- a) 회원국이 ISU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b) 회원국이 이 정관과 ISU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 c) 회원국의 총회에 따를 때 그 회원이 자국에서 ISU 스포츠 종목을 대표하는 국가 기구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 d) 회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예: 정부의 부당한 간섭 등)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e) 회원국이 ISU의 목적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또는
 - f) 이사회가 판단하기에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정당화하는 그 밖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1.4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결정하기 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회원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CAS에 항소할 수 있다.
- 11.5 이사회의 자격 정지 결정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원에 부과할 수 있으며, 정지의 해제는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자격 정지는 사안의 사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도 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자격 정지를 철회할 수 있다.
- 11.6 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중 총회에 출석하고 참가할 권리를 포함하여, 회원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 11.7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 정지에 갈음하거나 이에 더하여 회원을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Skating Integrity Unit)에 회부할 권리를 가지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의 제재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 a)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회원이 충족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조건을 정하거나 회원이 밟아야 할 절차를 정하는 것;
 - b)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로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는 것;
 - c)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
 - d) 이미 약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금 또는 모든 형태의 발전 기여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
 - e) 해당 회원의 국가에서 ISU 대회, 이벤트 또는 ISU 활동의 개최를 배제하는 것;

- f) 해당 회원 소속의 선수, 선수 지원 인력 및 오피셜을 모든 ISU 이벤트에서 배제하거나, ISU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직책 보유에서 배제하는 것;
- g) 자격이 정지된 회원의 선수, 선수 지원 인력, ISU 오피셜 및 대표자에 대하여 모든 ISU 이벤트 및 활동에 관한 인증(accreditation)이나 그 밖의 혜택을 박탈하거나 거부하는 것; 또는
- h)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에 ISU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청구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

조직

12 ISU 기구

- a) 총회는 ISU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b) 이사회는 전략 수립 및 감독 기구이다.
- c) 기술위원회는 스포츠 규칙 및 관련 문서 등 ISU 스포츠 종목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고 감시하며 이에 관하여 자문하는 일차적 기구이다.
- d) 선수위원회는 선수의 이익과 권리를 대표하며, ISU의 의사결정 절차에서 선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
- e) 선거위원회는 ISU 내 선거 절차를 관리하고 감독하여 청렴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 f)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는 외부 감사인을 감독하고 ISU의 재정 건전성과 규정 준수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총회가 선임하는 외부 감사인은 스위스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공인된 기준에 맞추어 ISU의 회계와 재무제표에 대한 모든 감사를 수행한다.
- g) ISU 사무국은 집행, 운영 및 행정 기구이다.
- h)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는 스포츠에서 윤리 기준 위반 혐의 및 그 밖의 청렴성 관련 비위 사안을 조사하고, 이사회와 총회에 윤리 모범 관행 기준을 제안하는 기구이다.
- i) ISU 징계위원회는 ISU 내의 분쟁, 징계 사안 및 항소를 심판하여, 이 정관과 적용되는 ISU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12.1 이 제12조에 정한 ISU 기구의 직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는 아래에 정한 임기 수만큼 같은 직위에서 재임할 수 있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회장, 부회장 및 위원장의 직위는 서로 구별되며 ISU 기구의 위원 직책과도 구별된다.

12.2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을 제외하고, ISU 기구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직위에서 3회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12.3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위에서 2회 임기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 12.4 그 누구도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ISU의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을 통틀어 6회를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다만, 선수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재임한 횟수 및 위원회에 임명된 선수 위원으로 재임한 횟수는 총 재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12.5 회장, 부회장, 이사회 위원 및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하고, ISU 기구에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자는 자신이 선출되는 총회가 열리는 해의 1월 1일에 70세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2.6 회장, 부회장, 이사회 위원 및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 운영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신이 선출되는 총회가 열리는 해의 1월 1일에 75세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2.7 제24.5조부터 제24.7조까지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 정관에 따라 어느 직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의 경우, 그 직위에서 최소 2년 이상 재임한 때에만 그 임기를 최대 재임 횟수에 산입한다.
- 12.8 다른 ISU 기구에 대한 투표권 없는 연락 담당으로 지명된 이사회 위원과 선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둘 이상의 ISU 기구에서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 12.9 다음 ISU 기구의 위원 또는 위원장은 자신의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에 ISU 이벤트, 국제 대회 또는 ISU 공인 대회에서 ISU 오피셜로 활동할 수 없다:
- i. 이사회
 - ii. 선거위원회
 - iii.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
 - iv. 징계위원회
 - v.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

총회

13 개요

총회를 관장하는 일반 규칙과 절차는 이 정관에 정하며, 이 정관의 하위 규범인 총회 운영규칙에 더욱 상세히 정한다. 총회 운영규칙은 안건 준비, 표결 절차,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총회 회의가 효과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하는 포괄적 지침을 제공한다.

14 총회(CONGRESS)

- 14.1 총회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로 한다. 총회는 대면(오프라인), 온라인(화상) 또는 하이브리드(대면 및 온라인 병행)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14.2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한다. 이사회는 정기총회의 장소와 일자를 정한다. 회원들에게는 그 정기총회의 장소와 일자를 최소 4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식 초청은 총회 일자의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초청에는 안건, 회장 보고서 및 총회 표결에 부쳐지는 안건 항목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14.3 총회는 회원의 절반이 출석한 때에 적법하게 성립한다. 총회 개회로 통지된 시각으로부터 60분 이내에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총회를 개회할 수 있으며, 이 연기된 회의에는 정족수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연기된 총회는 최초 총회의 안건에 적법하게 포함된 항목만을 다룰 수 있다. 출석 인원으로 인하여 연기된 회의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심의와 결정은 유효하다. 적법하게 성립한 총회에서 회원들이 퇴장하여 남은 회원들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총회는 연기된 회의와 동일한 안건상 제한을 받으면서 계속할 수 있다.
- 14.4 이사회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4.5 회원의 5분의 1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사회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 요구서에는 안건 의제를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에는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만 포함될 수 있다. 요구서에는 요구의 구체적 사유도 명시하고, 명시된 안건 항목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시총회는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14.6 임시총회 개최 최소 1개월 전에 회원에 장소, 일자 및 안건을 통지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시총회의 안건은 변경할 수 없다.

15 총회의 권한

총회는 이 정관에 정한 권한을 가지며, 특히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a) 이 정관의 개정;

- b) 회장 선출;
- c) 부회장으로서 피겨스케이팅 부문을 관장할 1인과 스피드스케이팅 부문을 관장할 1인을 선출;
- d) 선수위원회의 이사회 대표를 제외한 이사회 위원을 선출;
- e) 위원회 위원장 및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을 선출;
- f) 징계위원회와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선출;
- g)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4년마다 외부 감사인을 선임;
- h) ISU의 재무제표와 예산을 승인;
- i)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ISU 포상을 수여;
- j) 제45조에 따라 ISU를 해산;
- k) 회원의 회비를 책정; 그리고,
- l) 이사회가 적법하게 통지한 그 밖의 사항.

16 투표권, 대표단 및 옵서버

- 16.1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을 모두 관장하는 ISU 회원은 2표를 가진다. 그 밖의 모든 ISU 회원은 1표를 가진다. 회원 자격이 임시적이거나 정지된 회원, 또는 ISU 기구나 CAS의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의결권이 정지된 회원은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다.
- 16.2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을 모두 관장하는 ISU 회원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은 총 6인으로 제한하며, 그 대표단에 최소 1인의 현역 선수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피겨스케이팅 또는 스피드스케이팅 중 하나만을 관장하는 ISU 회원을 대표하는 인원은 총 3인으로 제한하며, 그 대표단에 최소 1인의 현역 선수를 포함할 것과 대표단이 남녀 양성을 모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출석한 회원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승인된 온라인 출석은 출석으로 본다. 총회에서는 대리 투표나 서면에 의한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 16.3 대표자는 자신이 대표하는 회원의 임원진이거나 현역 선수 또는 스태프여야 하며, 그 회원 단체의 적법한 기관이 임명하여야 한다.
- 16.4 ISU 직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는 그 임기 중에 자신이 소속된 회원의 대표자로 임명될 수 없다.
- 16.5 회장은 총회 운영규칙에 따라 총회의 의사를 진행한다.

17 ISU 회장, 부회장, 이사회, (해당하는 경우) 각 위원회, 징계위원회 및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IU") 운영위원회의 후보자

- 17.1 선수위원회, 선거위원회,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 및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오직 회원만이 ISU 기구에 선출될 직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각 후보자는 후보 추천 개시 전에 공개된 통일 기준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 17.2 피겨스케이팅 부문의 회원만이 피겨스케이팅 부문 이사회 위원을 표결로 선출할 수 있고, 스피드스케이팅 부문의 회원만이 스피드스케이팅 부문 이사회 위원을 표결로 선출할 수 있다. (부회장 선출에 관하여는 제20.4조 (i)를 참조한다.)
- 17.3 이사회는 선거위원회 위원,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 위원, 그리고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후보자 추천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이 후보들은 먼저 선거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18 정기총회 안건

- 18.1 ISU 사무국은 이 정관과 총회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안건을 작성한다. 회원이 총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제안은 총회 개최 최소 3개월 전까지 간략한 설명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ISU 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19 총회의 의결

- 19.1 정관 개정에 관한 표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과반(50% 초과)이 총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19.2 정관의 채택 또는 개정 제안은 투표수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채택된다.
- 19.3 그 밖의 모든 제안은 투표수의 단순 과반을 요한다.

20 선거, 그 밖의 의결 및 의결정족수

- 20.1 선거는 비밀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 개표로 실시한다.
- 20.2 표결이 필요한 그 밖의 의결은 전자 개표 또는 거수로 한다. 거수로 찬성 다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거수를 구체적으로 집계하도록 할 수 있다. 어느 ISU 회원국이든 비밀투표를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요청에 대한 표결은 토론 없이 즉시 실시한다. 그 요청은 출석 회원국의 10분의 1(10%) 이상이 지지하면 가결된다.

20.3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i. 어느 기구의 한 직위에 대한 선거에 후보가 1명뿐인 경우, 총회 의장은 그 기구의 해당 인사를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ii. 「투표수」는 제20.7조에 따라 해석한다.
- iii. 한 직위에 대한 투표인 경우:
 - a) 1차 투표에서 한 직위에 후보가 2명이면 투표수의 과반(50% 초과)을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두 후보의 득표가 같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두 차례 투표에서 모두 득표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 b) 한 직위에 후보가 2명을 넘으면 후보가 2명이 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투표를 실시하며, 매 투표에서 최소 득표 후보를 탈락시킨다. 남은 두 후보 간 최종 투표에서 단순 과반을 얻은 후보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두 후보의 득표가 같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두 차례 투표에서 모두 득표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 iv. 어느 기구의 2개 이상 직위를 선출하는 투표인 경우:
 - a) 후보 수가 배정된 직위 수를 넘으면 모든 후보를 1차 투표에 올리고 최소 득표 후보를 탈락시킨다.
 - b) 이후, 매회 후보 1명씩을 탈락시키며 투표를 이어 가고, 남은 후보 수가 배정된 직위 수와 같아지면 그 후보들을 선출된 것으로 본다. 후보들의 선출 순위는 최종 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 따른다.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동순위로 유지한다.
 - c) 어느 한 투표에서 최소 득표 후보가 둘 이상인 경우, 득표가 같은 후보들 사이에 결선 투표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추가 결선 투표에서 최소 득표를 한 후보를 탈락시킨다. 그래도 득표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20.4 회장 1명, 부회장 2명 및 그 밖의 이사회 위원 10명은 회원들이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a) 모든 회원은 회장과 부회장 2명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다.
- b) 피겨스케이팅을 대표하는 회원은 피겨스케이팅을 대표하는 5명의 이사회 위원을 각각 선출하기 위하여 각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c) 스피드스케이팅을 대표하는 회원은 스피드스케이팅을 대표하는 5명의 이사회 위원을 각각 선출하기 위하여 각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d) 두 부문을 모두 대표하는 회원은 피겨스케이팅 선출을 위한 1개의 투표권과 스피드스케이팅 선출을 위한 1개의 투표권을 각각 가진다.

- 20.5 (부회장 선거 시) 가장 먼저 선출되는 부문 대표는 직전 선거 총회에서 가장 먼저 선출된 대표와 다른 부문에서 나와야 한다.
- 20.6 의결은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수의 단순 과반 찬성으로 충분하다.
- 20.7 필요한 과반수(정족수)를 계산할 때, 기권표와 무효표는 유효 투표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1 회의록

- 21.1 각 총회의 회의록은 ISU 사무국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선거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 a) 총회의 일자, 시각 및 장소.
 - b) 회원국, 직책 보유자 및 초청 인사를 포함한 참석자 명단.
 - c) 논의 내용과 통과된 의결 사항의 요약.
 - d) 실시된 표결의 결과(찬성, 반대 및 기권 표수를 포함한다). 다만, 단순 거수로 의결한 경우에는 표결 결과만 기재한다.
- 21.2 회의록 초안은 총회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작성하여 모든 회원에 배포한다. 회원은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ISU 사무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1.3 이사회가 승인한 수정 사항을 반영한 회의록 최종본은 회장과 사무총장이 확인하고 서명한다. 확정된 회의록은 모든 회원에 배포하고 ISU 공식 기록으로 보관한다.
- 21.4 아울러, 회의록 요약본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ISU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2 의결의 효력 발생일

총회가 통과시킨 의결 사항은 총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총회 폐회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3 다른 ISU 기구에 대한 총회 규정의 적용

선거, 의결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밖의 모든 ISU 기구에도 적용된다.

이사회

24 구성, 임기, 연령 제한 및 유고

24.1 이사회(COUNCIL)는 다음 14명으로 구성한다:

- i. 회장 1명;
- ii. 부회장 2명(피겨스케이팅 1명, 스피드스케이팅 1명). 그 중 1명을 제1부회장으로, 다른 1명을 제2부회장으로 지정한다;
- iii. 그 밖의 선출직 위원 10명(피겨스케이팅 5명, 스피드스케이팅 5명); 및
- iv. 선수위원회 위원장 또는 대표 1명.

24.2 제1부회장은 항상 직전 제1부회장과 다른 부문에서 나와야 한다.

24.3 회장, 부회장 및 그 밖의 이사회 위원은 총회에서 임기 4년으로 선출한다. 임기는 이들이 선출된 총회의 폐회 직후에 시작된다.

24.4 이사회 위원은 선수위원회 대표를 제외하고, 모두 서로 다른 국적과 서로 다른 ISU 회원 소속이어야 한다.

24.5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부회장이 다음 총회까지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 해당 총회는 필요한 경우, 잔여 임기를 수행할 새 회장을 선출한다. 제1부회장이 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부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24.6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회장은 같은 부문에서 이사회 위원으로 선출될 당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이사회 위원이 대신한다. 이 교체로 생긴 결원은 제24.7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운다.

24.7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 밖의 이사회 위원은 같은 부문 안에서 해당 직무에 대해 최다 득표를 한 차점 후보가 대신한다.

25 이사회 위원의 의무

이사회 위원은 항상 ISU와 ISU 스포츠 종목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그 행위와 결정은 이 정관, ISU 윤리강령 및 그 행위를 규율하는 그 밖의 모든 ISU 규정을 따라야 하며,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ISU의 목적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26 이사회의 권한

26.1 이사회는 ISU의 사명, 전략 방향 및 가치를 정한다. 특히 전 세계 차원의 ISU 스포츠 종목 조직 및

발전과 그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그러하다.

- 26.2 이사회는 총회가 통과시킨 의결을 이행하고 집행할 권한을 가지며, 그 의결이 조직 안에서 실효적으로 실행되고 준수되도록 한다.
- 26.3 이사회는 ISU가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책임을 진다. 여기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절차가 포함되며, 적절한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감독할 책임도 포함된다.
- 26.4 이사회는 운영 사항의 집행과 관리를 ISU 사무국에 위임한다. ISU 사무국은 회장과 이사회의 권한과 감독 아래 운영되며 이들에게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밖의 사항을 특정 위원회나 실무그룹에 위임할 수도 있다.
- 26.5 이사회는 ISU 이벤트의 개최지 배정과 일정 편성을 책임진다.
- 26.6 이사회는 ISU 사무국이 작성한 예산안과 감사 완료된 재무제표(필요한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총회 제출용으로 승인한다.
- 26.7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특정 위원회나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 26.8 이사회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 과반의 찬성으로 사무총장을 임명하며, 적용되는 고용법에 따라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 26.9 이사회는 이 정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ISU 규정 전반을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운영규칙, 이사회 절차 및 지침, 기술위원회 직무규정, 선거규정의 각 A 섹션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6.10 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라 다른 기구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ISU 관련 사항을 처리한다.

27 대회 및 이벤트 규정과 스포츠 규칙

- 27.1 이사회는 ISU 이벤트, 국제 대회 및 ISU 공인 이벤트를 관장하는 대회 및 이벤트 규정과 ISU 스포츠 종목을 관장하는 스포츠 규칙을 채택, 개정 또는 폐지할 최종 권한을 가진다.
- 27.2 이사회는 기술위원회 또는 회원의 제안을 접수하면 기술위원회 직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제안을 검토하며, 결정에 앞서 명확성과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위원회 및/또는 제안을 제출한 회원과 추가로 협의할 수 있다.

28 이사회 회의

- 28.1 이사회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자주, 스스로 정하는 시각과 장소에서 회의를 열며, 매 역년마다 최소 2회의 대면 회의를 개최한다.

- 28.2 이사회 회의는 대면, 화상회의 또는 그 밖의 통신 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
- 28.3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으로도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 절차 및 지침에 정한 최소 통지 기한 요건에 따른다.
- 28.4 이사회 회의의 통지에는 일자, 시각, 장소 또는 통신 수단, 안건과 함께 이사회 의결에 부칠 제안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 28.5 회장이 소정 수의 이사회 위원이 적법하게 요청한 이사회 회의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소집을 요청한 이사회 위원들이 그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진다.
- 28.6 사무총장은 모든 이사회 회의에 의결권 없이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의 안건이 사무총장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장은 전문 지식이나 특정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을 이사회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록은 회장의 책임 아래 작성한다.
- 28.7 이사회 회의를 열려면 긴급 이사회 회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위원 7명의 정족수가 있어야 하며, 그 정족수는 회장과 각 부문에서 3명씩의 이사회 위원(해당 부문 부회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한다. 이사회 위원은 ISU 규정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회의에서 자신을 대리할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다.
- 28.8 이사회는 회람 표결(Circular vote),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수단으로 의결할 수 있다.
- 28.9 이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회의의 의결은 투표수의 단순 과반으로 한다. 회람 표결에 의한 의결은 이를 위하여 정한 기한 안에 이루어진 투표수의 단순 과반을 요한다.
- 28.10 이사회 회의의 의결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28.11 이사회 회의의 논의 내용은 비밀로 한다. 이사회 위원은 이사회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정보나 문서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ISU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9 이사회 위원의 직무 정지 및 해임

- 29.1 이사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는 그 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a) ISU 정관 및/또는 ISU 윤리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b) ISU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c) 이사회 위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d) 형사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및/또는

e)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총회가 열릴 때까지 필요한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위원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 앞서 해당 위원에게 이사회에 서면 및/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준 경우에 한한다.

잠정적인 직무 정지는 다음 총회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기간에 직무가 정지된 위원은 이사회 위원으로서 권리나 의무를 일체 행사할 수 없다.

29.2 총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a) 해당 이사회 위원에게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려는 의사를 해임 사유를 명시하여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것; 및

b) 해당 이사회 위원에게 표결에 앞서 총회에 서면 및/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

29.3 긴급한 경우로서 해당 이사회 위원이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이 ISU의 이익이나 명예에 즉각적인 위험이 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위원의 직무를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회장이 명한 잠정적인 직무 정지는 30일 이내에 이사회가 재검토하며, 이사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잠정적인 직무 정지를 확정할지, 변경할지, 해제할지를 결정한다.

29.4 이사회 위원의 직무 정지 또는 해임으로 생긴 결원은 제24.7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채운다.

회장

30 회장

30.1 회장은 ISU를 대표하는 최고 대표자이다.

30.2 회장은 이사회가 정한 ISU의 사명, 전략 방향, 정책 및 가치가 특히 ISU 사무국에 의하여 보호되고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0.3 회장은 ISU 회원, 정치 기구 및 국제기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0.4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회장은 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없고 이사회에서는 통상의 의결권 1표를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0.5 회장은 ISU 내부통제 시스템의 일부로 정해진 정책과 통제를 따른다.

사무총장 및 ISU 사무국

31 사무총장

- 31.1 사무총장은 ISU 사무국의 조직, 관리 및 지휘를 책임진다.
- 31.2 사무총장은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 31.3 사무총장은 임명에 앞서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가 실시하는 자격 심사를 만족스럽게 통과하여야 한다.
- 31.4 사무총장의 권한과 책임은 ISU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정책에서 더욱 상세히 규정한다.

32 ISU 사무국

- 32.1 ISU 사무국은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다음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이사회의 의결 및 지시와 적용되는 ISU 규정에 따른 대회 조직 및 그에 관련된 모든 사항;
 - 이사회가 정한 기준, 정책 및 절차에 따른 모든 상업적 계약의 교섭, 체결 및 이행;
 - ISU 기구에 대한 행정 운영 지원;
 -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ISU의 운영 및 일상 업무 관리; 및
 - 이사회와 스위스 법이 요구하고 승인하는 바에 따라 ISU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에 필요한 그 밖의 모든 행정 사항.
- 32.2 ISU 사무국은 사무총장이 관리하며, 사무총장은 ISU 사무국 기능의 수행에 관하여 회장과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회장과 이사회는 ISU 사무국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32.3 ISU 사무국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는 ISU 내부통제 시스템의 일부를 이루는 내부 규정에서 더욱 상세히 규정한다.

위원회

33. 위원회

이 정관 제12조에 따라 ISU는 기술위원회(TC), 선수위원회, 선거위원회 및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를 둔다.

33.1 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a)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기술위원회;
- b) 아이스댄스 기술위원회;
- c)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기술위원회;
- d) 스피드스케이팅 기술위원회; 및
- e) 쇼트트랙 기술위원회.

33.2 기술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a) *싱글 및 페어 스케이팅 기술위원회*: 위원장 1명과 총회가 선출하는 위원 4명, 그리고 이사회가 임명하는 의결권 없는 위원 최대 2명;
- b) *아이스댄스 기술위원회*: 위원장 1명과 총회가 선출하는 위원 3명, 그리고 이사회가 임명하는 의결권 없는 위원 최대 2명;
- c)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기술위원회*: 위원장 1명과 총회가 선출하는 위원 3명, 그리고 이사회가 임명하는 의결권 없는 위원 최대 2명;
- d) *스피드스케이팅 기술위원회*: 위원장 1명과 총회가 선출하는 위원 3명, 그리고 이사회가 임명하는 의결권 없는 위원 최대 2명;
- e) 쇼트트랙 기술위원회: 위원장 1명과 총회가 선출하는 위원 3명, 그리고 이사회가 임명하는 의결권 없는 위원 최대 2명.
- f) 각 회원은 위원회의 임명직에 고려할 대상자를 이사회와 해당 기술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33.3 선수위원회는 다음 각 종목에서 최소 1명씩의 선수로 구성한다:

- 싱글 피겨스케이팅
- 페어 피겨스케이팅
- 아이스댄스
-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 스피드스케이팅
- 쇼트트랙;

각 경우, 그 선수는 선수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같은 종목에 참가하는 동료 선수들이 선출한다.

- 33.4 선거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사회 또는 회원이 적절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를 바탕으로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가 총회에 후보로 지명하고, 총회는 선거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최종 승인한다. 선거위원회 위원들은 그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 33.5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승인하는 적절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회원은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 직무규정에 따라 그 직위에 고려할 인물을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 위원들은 그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 34. 위원회 일반사항**
- 34.1 위원회의 주된 목적은 이 정관 제12조에서 정한다. 이 정관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구성, 구체적 임무와 권한은 이 정관에 정한 원칙에 따라 이사회가 제정하는 ISU 규정에 정한다.
- 34.2 각 위원회는 ISU 규정 중 관련 부분의 개정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
- 34.3 이 정관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회원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 및 성별 대표성과 요구되는 전문성 및 지식의 종류를 고려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 34.4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다음 총회까지 이사회가 임명하는 새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능한 한 직전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하였던 차점 후보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차기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IU)

35. IU의 설치와 임무

- 35.1 ISU는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IU)를 설치하고 유지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ISU 윤리강령과 그 밖의 관련 ISU 규정을 실효적으로 감독하고 집행함으로써 ISU 스포츠 종목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와, 그 청렴성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ISU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 b) 그 노력의 일환으로 ISU가 세계 반도핑 규약 서명 당사자로서 의무와 IOC 윤리강령, 그리고 이 정관 및 ISU 규정에 정한 그 밖의 거버넌스 및 윤리 준수 의무를 항상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
- 35.2 IU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다음 권한이 포함된다:
- a) ISU 기구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모든 사람, ISU 오피셜, 회원국, 선수, 선수 지원 인력 및 ISU 윤리강령과 관련 ISU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그 밖의 사람에게 그에 따른 의무를 교육하고 그 의무의 준수를 감시할 권한;

- b) ISU 윤리강령과 그 밖의 관련 ISU 규정을 개정하도록 이사회에 요청할 권한;
- c) ISU가 세계 반도핑 규약 서명 당사자로서 의무와 이 정관 및 ISU 규정에 정한 그 밖의 거버넌스 및 윤리 준수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할 권한;
- d) ISU의 이름으로 ISU 윤리강령과 그 밖의 관련 ISU 규정의 위반 가능성을 조사할 권한;
- e) ISU의 이름으로 ISU 윤리강령과 그 밖의 관련 ISU 규정의 위반 혐의를 징계위원회에, 반도핑 규약 위반에 관한 사안인 경우에는 관할권을 가진 다른 기구에 소추할 권한;
- f) ISU의 이름으로 징계위원회 또는 관할권을 가진 다른 기구의 결정에 대한 CAS 항소를 제기하거나 그에 대응할 권한; 그리고
- g) 그 밖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관련 정보와 자료를 얻고 이를 그 당국과 공유할 권한.

35.3 이사회(Council)는 IU의 구조와 운영(IU 운영위원회의 각 권한, 역할, 책무 및 직권 포함)을 규정하고 명시하는 IU 규정을 채택한다. 이사회는 IU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IU 규정을 개정 및/또는 보완할 수 있다.

36. 운영상의 독립성

- 36.1 IU는 ISU 안의 한 부서로 두되, 이 제36조에 정하고 IU 규정에서 다시 확인하고 명문화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 독립성을 가진다.
- 36.2 제35조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총회, 이사회, 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권과 권한은 ISU 규정에 정한 범위에서 IU 운영위원회와 지정된 직원에게 위임한다. 다만 ISU 규정이나 이 정관에 정한 범위 또는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6.3 IU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5명으로 구성한다:
 - a) 총회가 임명하는 3명으로서, ISU 및 그 회원 단체로부터 독립적이고 스포츠 거버넌스 및/또는 윤리 및 청렴성 분야에 적합한 경험을 갖춘 사람. 그 중 1명은 법률 분야 경력도 갖추어야 한다. 총회가 임명하는 각 위원은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총회는 IU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한다.
 - b) 이사회가 지명하는 이사회 위원 1명. 의결권은 없다.
 - c) 지정된 직원 1명. 의결권은 없다.

IU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제36.3조 a)에 따라 임명된 위원은 ISU 오피셜이나 다른 ISU 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IU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임명된 위원 2명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임기는 이들이 임명된 총회의 폐회 시에 시작된다. IU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위에서 최대

2회의 임기까지 재임할 수 있다. 연령 제한에 관하여는 제12.5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적용한다.

36.4 IU 운영위원회의 투표권이 있는 위원은 ISU 규정에 정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36.5 IU 운영위원회는 그 활동을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는 매년 또는 요청이 있을 때 보고한다.

징계위원회

37. 역할과 권한

37.1 징계위원회는 ISU의 사법 기구이다.

37.2 징계위원회는 ISU 안의 모든 징계 및 청렴성 사안을 심판하는 기구의 역할을 한다. 징계위원회는 ISU 윤리강령과 반도핑 규약(다른 기관에 회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에 관련된 모든 문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ISU 윤리 및 징계 사안이 집행되도록 한다. 징계위원회는 해당하는 경우 ISU 징계 절차에 따라 그 위반 행위를 조사, 심리 및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

37.3 징계위원회는 ISU와 ISU 스포츠 종목의 청렴성과 윤리 기준을 지키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7.4 이 조항들은 회원의 자격 정지와 제명에 관한 총회와 이사회의 징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8. 구성, 임기, 해임 및 자격 상실

38.1 징계위원회는 피겨스케이팅 또는 스피드스케이팅에 경험이 있는 위원장 1명과, 징계위원회 패널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밖의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2명은 피겨스케이팅에, 위원 2명은 스피드스케이팅에 경험이 있어야 한다. 모든 위원과 위원장은 법률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8.2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총회가 선출하며, 다른 ISU 기구의 위원이 될 수 없고 ISU 오피셜로 활동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에 재임하는 동안 어느 ISU 회원 단체의 운영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38.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이들이 선출된 총회의 폐회 시에 시작된다.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회의 임기까지 재임할 수 있다.

38.4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그 직무에서 해임될 수 있다.

38.5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거나 영구적으로 직무 수행 능력을 잃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사회는 다음 총회까지 재임할 후임자를 임명하고, 잔여 임기를 수행할 후임자는 다음 총회가 선출한다.

중재

39. 스포츠중재재판소(CAS)

- 39.1 ISU는 ISU, 회원, 선수, 오피셜 및 이 정관과 ISU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 또는 단체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독립 기구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인정하며, 이는 이 정관 및 ISU 규정에서 CAS에 대한 항소를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한다.
- 39.2 중재 절차에는 CAS 스포츠 관련 중재 규정을 적용한다. CAS는 각종 ISU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스위스 법을 적용한다.
- 39.3 ISU의 결정에 관하여 CAS가 내린 모든 판정은 ISU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40. CAS의 관할

- 40.1 정관과 ISU 규정이 정하는 범위에서, ISU와 그 산하 기구가 내린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는 해당 결정을 수령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CAS에 제기되어야 한다.
- 40.2 CAS에 대한 항소는 다른 내부의 모든 구제 수단을 다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다.
- 40.3 일반적인 국가 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CAS 판정에 대한 항소를 다루는 스위스 연방최고법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집행정지 효력의 부존재

CAS 항소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해당 ISU 기구 또는 CAS는 그 항소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명할 수 있다.

42. 도핑 관련 결정

- 42.1 ISU는 ISU 반도핑 규약, 세계 반도핑 규약 및 회원 단체에 적용되는 관련 국내 반도핑 법령의 관련 조항에 따라, 특히 회원 단체나 국가반도핑기구(NADO)가 내린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도핑 관련 결정에 대하여 CAS에 항소할 수 있다.
- 42.2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ISU 반도핑 규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ISU, 회원 단체 또는 국가반도핑기구가 내린 내부적으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도핑 관련 결정에 대하여 CAS에 항소할 수 있다.

대회 및 이벤트 권리

43. ISU 이벤트와 그 밖의 대회

- 43.1 ISU는 내용, 시간, 장소 및 법률상의 어떠한 제한도 없이, ISU 이벤트와 활동 및 그 관할에 속하는 기타 이벤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독점적 소유자이다. 이러한 권리에는 특히, 모든 종류의 재정적 권리, 시각, 청각 및 라디오 녹음권리, 복제 및 방송 권리, 멀티미디어 권리, 마케팅 및 프로모션 권리, 그리고 엠블럼과 같이 저작권법 및 상표법에 따라 발생하는 무형자산권 등이 포함된다.
- 43.2 이사회는 이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사회는 이 권리를 단독으로 활용할지, 제3자와 공동으로 활용할지, 전적으로 제3자를 통하여 활용할지를 결정한다.

면책

44. 직책 보유자 및 그 밖의 사람에 대한 면책

ISU는 이로써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선출이나 임명에 의하여 또는 ISU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직책 보유자, 그 밖의 위원회나 다른 기구의 위원, 어떠한 자격으로나 그 밖의 오피셜, 또는 ISU의 직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이 조항의 목적상 ISU의 대표자로 간주한다. 그러한 직무 수행을 이유로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조사 절차를 비롯한 계류 중이거나 완료된 모든 소송, 고소 또는 법적 절차의 피고가 되었거나 피고 측 당사자인 자가 실제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부담한 비용, 판결금, 벌금 및 화해금은 ISU에 의해 또는 ISU를 대리하여 면책된다. 단, 해당 인원이 선의로 행동하였고, ISU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믿은 방식으로 행동하였으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본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면책은 지정된 자격으로의 복무를 종료한 자에게도 계속하여 미치며, 그 상속인, 유언집행인 및 유산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최종 규정

45. 해산

- 45.1 ISU는 해산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소집된 총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만 해산될 수 있다.
- 45.2 해산하는 경우, 총회는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은 ISU를 위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와 부채를 변제한다. 청산 후 잔여 자산이 있는 경우, 이는 총회의 지시에 따라 ISU 스포츠 종목의 지속적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적절한 기구에 기부한다.

46.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ISU 규정에 따라 ISU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47. 준거법

이 정관은 스위스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48. 시행

48.1 이 정관은 2025년 7월 3일 로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2026년 총회 첫날 개회 시점에 완전한 효력을 발생한다.

48.2 정관의 개정은 그 의결 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49. 경과 규칙

이 정관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부록 1에 정한 경과 규칙을 적용한다.

부록 1. 경과 규칙

본 부록 1. 경과 규칙의 목적상, 2024년 ISU 총회에서 개정되어 채택된 ISU 정관 및 일반규정은 "2024 정관"이라 한다. 2025년 ISU 총회에서 채택된 ISU 정관은 "2025 정관"이라 한다. 2025 정관과 함께 채택된 ISU 규정은 각각의 개별 명칭으로 부른다.

I. 효력과 기간

2025 정관의 채택으로 "경과 기간"이 시작되며, 이 기간에는 2024 정관과 2025 정관의 일부가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 이 기간 중에 2024 정관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가지는 조항과, 총회가 2025 정관을 채택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2025 정관의 조항 사이에 충돌이 생기거나 이 경과 규칙이 예견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가 2025 정관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 경과 규칙은 2025년 임시총회가 2025 정관을 채택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II. 영구 경과 규칙

2025년 임시총회 개최 시점에 2024 정관 제15조에 따라 명예회장, 명예부회장 또는 명예회원인 모든 사람은 2024 정관 제15.7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 칭호를 종신 보유하며, 향후 개최되는 ISU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2024 정관 제13조 1항 a)호에서 허용하는 최대 3회의 임기를 동일한 직위에서 모두 수행하게 되는 ISU 직책 보유자는 2025 정관에 따라 앞으로의 총회에서 동일한 직위의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없다.

2024 정관에서 허용하는 동일한 직위의 최대 허용 임기 3회를 아직 다 수행하지 않은 ISU 직책 보유자는 2025 정관에 따라 같은 직위의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있으며, 2024 정관 제13조 1항 a)호에서 허용하는 최대 3회의 임기까지 같은 직위에 선출될 수 있다. ISU 직책 보유자가 2024 정관에 따라 동일한 직위에서 수행한 임기는 2025 정관 제12.1조에 따른 동일한 직위 최대 3회의 임기에 합산한다.

2026년 선거 총회 이전에 ISU 기구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서 수행한 임기 수는 2025 정관 제12.2조에 따른,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ISU 직위를 통틀어 적용되는 누적 6회의 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경과 기간에 징계위원회 위원은 2026년 총회가 시작할 때까지 ISU 오피셜로 활동할 수 있다.

III. 2024 정관

다음 조항 또는 조항의 일부는 2025년 임시총회 폐회와 동시에 즉시 적용이 중단된다:

- a) 제6/5조: ISU 회원 자격/투표권수
- b) 제6/10조: ISU 회원 자격/항소
- c) 제7/3조: ISU 준회원의 권리 — 이는 이후 2025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이사회 절차 및 지침 제2.2조에서 정한다
- d) 제7/4조: 특별 클럽의 권리
- e) 제8조 a): 조직, 기구
- f)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총회, 총회 조직, 부문별 안건
- g) 제16/1조, 제16/3조 b): 이사회/구성, 부회장
- h) 제17/1조 g): 이사회 의 직무 — "각 이사 및 이벤트 매니저"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 i) 제17/1조 m), n), o): 이사회 의 직무
- j) 제17/2조 a): 이사회 결정의 최종성
- k) 제18조 f): 사무총장 — "및 이벤트 매니저"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 l) 제18조 i): 사무총장
- m) 제19조: 이사
- n)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b): 기술위원회/수, 자격 및 구성, 직무
- o) 제21/2조 e) 선수위원회/추천/선출 절차
- p) 제24/4조 h) 발전위원회/직무
- q) 제25/1조~제25/4조, 제25/7조 징계위원회/선출, 구성, 독립성, 최소 결원, 절차 규칙
- r) 제28/3조 통신문 및 청산/결정의 유효성
- s) 제36/2조 선수위원회/회의
- t) 제38/2조: 오피셜 — "이벤트 매니저/보조 이벤트 매니저, 지역 보조 이벤트 매니저(RAEM)"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u) 제38/4조~제38/5조 이벤트 매니저, 보조 매니저 및 지역 보조 매니저.

제5/4조. ISU 기능 통화의 변경과 회계연도 말의 변경에 따라, 외부 감사인은 입찰 절차를 거쳐 2025년 6월 30일까지의 6개월간에 대하여 이사회가 선정하며, 총회는 2026년 총회에서 그 선정을 승인하고 2028년 6월 30일까지의 외부 감사인을 추가로 선임한다.

2024 정관 제16.2조는 2025 정관 제30조와 병행하여 적용한다. 상충하는 경우에는 2025 정관을 적용한다.

2024 정관 제17조 중 위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배제되지 않은 부분은 2025 정관 제26조 및 제27조와 병행하여 적용한다. 상충하는 경우에는 2025 정관을 적용한다.

2024 정관의 다음 조항은 2026년 선거 또는 선거 총회에는 명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제6/5조, 제8조 a), 제16/1조, 제16/3조 b), 제17/1조 m)의 일부, 제17/1조 n), 제17/1조 o), 제17/2조 a), 제18조 i),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b), 제21/2조 e), 제24/4조 h), 제25/1조~제25/4조, 제25/7조, 제28/3조, 제36/2조.

IV. 일반규정

아래 V. 예외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5년 7월 3일 임시총회에서 채택된 개정 ISU 정관과 이에 수반되는 ISU 규정(다만, ISU 규정에 관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ISU 이사회가 승인한 업데이트 버전)은 2026년 ISU 총회 개최와 동시에 발효한다.

V. 예외

경과 기간에 ISU 기구들을 보호하고, 2026년 총회 개시 시점에 2025 정관이 전면 적용되도록 준비하는 데 ISU 기구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IV 조에 대하여 다음의 예외를 적용한다:

2025 정관

- a)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총회)는 2025년 7월 3일 개최된 ISU 임시총회 폐회 시부터 적용한다.
- b) 제9/1조 a), b), c), d) 및 f)(회원국의 권리)는 2025년 7월 3일 개최된 ISU 임시총회 폐회 시부터 적용한다.
- c) 제12조(ISU 기구)는 2025년 7월 3일 개최된 ISU 임시총회 폐회 시부터 적용한다.
- d)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33조, 제34/1조 및 제38조는 2025년 7월 3일 개최된 ISU 임시총회 폐회 시부터 적용한다.
- e)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는 2025년 7월 3일 개최된 ISU 임시총회 폐회 시부터 적용한다.

1. **총회 운영규칙**은 2025년 7월 3일 ISU 임시총회 폐회 시에 발효한다.
2. **대회 및 이벤트 규정**은 2026년 총회에서 발효하나 2026년 총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규정은 2026년 총회 폐회 시까지 계속 적용한다.
3. **스포츠 규칙**은 2026년 총회에서 발효하나 2026년 총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규정과 기술규칙은 2026년 총회 폐회 시까지 계속 적용한다.
4. **그 밖의 규정**
 - a. **ISU 이사회 절차 및 지침**은 2025년 7월 3일 ISU 임시총회 폐회 시에 발효한다.
 - b. **ISU 선거규정**
 - i. 선거규정은 2025년 7월 3일 ISU 임시총회 폐회 시에 발효한다.
 - ii. ISU 선거규정 제4조에서 "IU"라는 용어는 "2024년 ISU 총회 후 임명된 회원국 협의 그룹과 협력하는 이사회"로 대체한다. 다만 2025년 선거위원회 선출에 관하여만 그러하다.
 - c. **ISU 선수위원회 직무규정**은 2025년 7월 3일 ISU 임시총회 폐회 시에 발효한다.
 - d. **ISU 기술위원회 직무규정**은 2025년 7월 3일 ISU 임시총회 폐회 시에 발효한다.
 - i. 기술위원회 직무규정 부속서에 정한 절차는 늦어도 2025년 9월 1일까지 시행한다.
 - ii. 기술위원회 직무규정 부속서에 따라 "cat iii" 변경에 해당하는 ISU 규정의 변경은 2025년 9월 1일부터 이사회가 승인하고 시행할 수 있다.
 - iii. 그 밖의 모든 ISU 규정 변경은 2026년 ISU 총회 폐회 시까지는 승인되거나 시행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e. **스케이팅 청렴성 부서 규정**은 2026년 총회 개회일에 발효한다.
 - f.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 직무규정**은 2026년 총회 폐회 시에 발효한다.
 - g. **ISU 징계 절차**는 2025년 7월 3일 임시총회 폐회 시에 발효하며 통신문 제2551호를 전부 대체한다.

해설:

1. 본 경과 규칙은 2026년 총회가 새 정관(2025 정관)에 따라 조직되고 진행되도록 2024 정관에서 2025 정관으로의 이행 조치들을 정한다. 이는 2026년 총회의 준비 작업이 이미 2025 정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따라서 2026년 총회 준비에 관여하는 모든 ISU 기구들이 2025 정관의 권한에 따라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 이사회, 기술위원회, 선수위원회, 징계위원회, 선거위원회, 감사·리스크·투자위원회에 필요하다.

(2025 정관)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는 이사회가 2025 정관에 근거하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새 정관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와 병행하여 이사회는 2024 정관에 따라서도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는 명시적으로 효력이 배제된 조항이나 그 일부를 제외한 2024 정관 제17조가 2026년 총회 개시 시까지 법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회는 경과 기간에 완전한 법적 책임과 통제권을 가지는 ISU 기구이다. 회장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회장은 2024 정관 제16/2조에 따라 계속 활동하되 동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2025 정관 제30조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0조는 2025년 7월 3일 ISU 임시총회 폐회 시에 발효하여 효력을 가져야 한다.

2. 기술위원회는 더 이상 일반규정, 특별규정, 기술규칙의 개정안을 준비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 작업들은 2024 정관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이를 준비하여 2026년 총회에서 채택되어야 했던 것들이다. 그 대신 임시총회 후 ISU 웹사이트에 플랫폼이 열린다. 회원들은 그때부터 일반규정, 특별규정, 기술규칙의 개정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술위원회와 이사회는 새 체계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기술위원회 직무규정 부속서가 발효함을 뜻한다.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2025 정관의 기술위원회 관련 조항들과 기술위원회 직무규정이 2025년 7월 3일 ISU 임시총회 폐회 시에 발효하여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2024 정관 제20/3조 a), c)~i)는 계속하여 적용된다. 이는 2025/2026 경기 시즌이 현행 일반규정, 특별규정, 기술규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반규정을 대체하게 될 대회 및 이벤트 규정이 2026년 총회에 이르러서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2025년 임시총회 폐회와 2026년 총회 개회 사이의 경과 기간에 예외적인 사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6년 총회 개회 시까지 법적 효력을 유지하는 2024 정관 제17/1조 q)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근거하여 이를 조치할 수 있다. 2025 정관이 2026년 총회 개시 시점에 2024 정관 전부를 최종적으로 대체하므로, 섹션 A를 포함하는 모든 ISU 규정은 부분적으로 총회의 승인 대상이 된다. 따라서 ISU 규정의 섹션 A 조항은 2025 정관의 일부로서 2025년 임시총회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총회 운영규칙, 이사회 절차 및 지침, 기술위원회 직무규정이 2025년 임시총회에서 채택되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선거규정에는 2025 정관에 따른 첫 선거 총회의 준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26년 총회의 선거에 적용된다. 따라서 선거규정의 해당 조항들은 2025년 임시총회에서 2025 정관 체계의 일부로 채택되어야 한다.
4. 선수위원회 직무규정에는 현재 2024 정관 제21조에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2026년 총회 이전에 적용될 새로운 선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2025년 임시총회에서 채택될 정관 체계의 일부이다.

5. (2025 정관) 제38조는 징계위원회가 경과 기간에 그 관할에 속하는 사안을 그 사안이 2024 정관에 속하든 2025 정관에 속하든 처리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규정한다.
6. 징계위원회는 2026년 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므로, 그 선출과 연결된 2025 정관의 모든 조항은 2025년 7월 3일 ISU 임시총회 폐회 시에 발효하여야 한다(제38조 참조). 또한 ISU 징계 절차는 더 이상 총회가 아니라 이사회가 채택하며, 이는 기존 제25/7조의 해당 규정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뜻한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025년 임시총회 폐회 직후 이사회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ISU 징계 절차 개정본을 채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징계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에 관한 조항(현행 제25/9조와 같은 규정)을 둔다. 2025 정관 자체에는 제재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는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2026년 총회까지의 경과 기간에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현 징계위원회 위원들은 2026년 총회까지 ISU 오피셜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7. 제46조(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제47조(준거법), 제48조(시행)는 2025년 7월 3일 개최된 임시총회 폐회 시부터 적용한다. 이는 경과 기간에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메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경과 기간에 2025 정관에서 비롯된 사안에 스위스법이 적용되도록 하며, 이 경과 규칙 자체가 정관상의 근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8. 이 경과 규칙은 경과 기간에 스위스 법원이나 CAS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ISU와 그 기구들을 보호하는 데 지극히 중요하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경과 기간에 열리므로 그 대회와 관련하여 CAS 또는 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ISU는 이에 대비하여 ISU 기구들이 확고한 정관상의 근거 위에서 활동할 권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부록 2 - 정의

ISU 정관 및 규정의 목적상, 문맥이 허용하는 경우:

- a.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며, 그 반대도 같다;
- b. 여성형은 남성형을 포함하며, 그 반대도 같다;
- c. 자연인에 대한 언급은 법인 또는 회사를 포함한다.

"선수 지원 인력"이란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선수와 함께 일하거나 그를 치료 또는 지원하는 코치, 팀 리더, 트레이너, 매니저, 에이전트, 팀 스태프, 연맹 관계자, 기술자, 의료인, 준의료인, 안무가, 부모, 그 밖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내부통제 시스템"/"SCI"란 기업 목표를 달성하고 절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오류와 부정을 식별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내부 업무 절차를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된 정기적 리스크 평가에 부합하는 조치를 말한다. SCI에는 회장, 부회장, 개별 이사회 위원, 사무총장 및 ISU 사무국의 권한과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정책과 내부 규정이 포함된다.

"ISU 통신문"이란 이사회의 일반적 결정을 공표하는 공식 수단을 말한다.

"ISU 이벤트"란 대회 및 이벤트 규정 제1조에 열거되고 기술된 대회를 말한다.

"ISU 직책 보유자"란 다음을 말한다:

-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위원
- 사무총장
- 기술위원회, 선수위원회 및 선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ISU 오피셜"이란 ISU 직책 보유자와 ISU 직원 외에, 대회 및 이벤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회의 규칙을 감독하고 지키게 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ISU 오피셜에는 저지, 레프리, 보조 레프리, 비디오 보조 레프리, 스타터, 선수 스튜어드, 스포츠 전문가, 테크니컬 컨트롤러,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 데이터 및 리플레이 오퍼레이터, OAC 위원, 도핑 관리관 및 샤프롱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ISU 규정"이란 ISU의 일관되고 모순 없는 법질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채택한, ISU 정관의 하위 규칙의 모음을 말한다. ISU 규정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섹션이 포함된 경우, 그 규정은 다음 정기총회가 그 섹션을 승인할 것을 전제로 이사회가 채택한다.

"ISU 스포츠 종목"이란 빙상에서 아이스스케이트를 착용하고 행하는 경주 또는 예술적 연기를 수반하는 모든 스포츠 종목과, 이들 스포츠의 e스포츠, 전자 게임 또는 그 밖의 디지털 방식 시뮬레이션 등을 말한다.